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641

발의연월일: 2025. 5. 30.

발 의 자:이수진・송옥주・김정호

서미화 • 전종덕 • 박홍배

허성무 • 민병덕 • 용혜인

한정애 · 안태준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의료인력 및 그 밖에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이하 "보건의료인력 등"이라 함)는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기관의 중요한 구성원임. 그런데 보건의료인력등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폭언·폭력·성 희롱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는 보건의료인력등의 안전은 물론 다른 환자의 안전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건의료인력등에 대한 폭언·폭력·성희롱 등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지침을 마련·준수하도록 하고,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대응지침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는 책무만 부여하고 있어 실효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건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폭언·폭력·성희롱 등 인권침

해로 피해를 입은 보건의료인력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담당 업무의 변경, 치료 지원 등의 조치를 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인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보건의료인력등에 대한 보호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3조의2(보건의료인력등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 ①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인력등을 폭언·폭력·성희롱 등 인권침해로부터 보 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인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보건의료인력등이 요청하는 경우 담당 업무 변경
 - 2. 인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보건의료인력등에 대한 치료 지원
 - 3. 인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보건의료인력등을 위한 상시적 고충처리 기구 설치. 다만,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고충처리위원을 두는 경우에는 보건의료인력등을 위한 고충처리위원의 선임 또는 위촉
 - 4. 인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보건의료인력등의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
 - 5. 그 밖에 보건의료인력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법적 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 ② 인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보건의료인력등은 보건의료기관의 장에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의료기관의

- 장은 전단에 따른 요구를 이유로 보건의료인력등에게 불이익을 주 어서는 아니 된다.
- ③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른 관리감독자는 보건의료인력 등에게 폭언·폭력·성희롱 등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제1항제3호에 따른 고충처리기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고충처리기구는 10일 이내에 조치 사항과 그 밖의 처리결과를 보건의료기관의 장과 해당 보건의료인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충처리기구는 인권침해 행위가다른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할 때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충처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장(제21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벌칙

- 제21조(과태료) ①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보건의료인력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보호조치를 요구한 보건의료인력등에게 불이익을 준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 지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3조의2(보건의료인력등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 ①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인력등을을 폭언·폭력·성희롱 등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한다. 1. 인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보건의료인력등이 요청하는 경우 담당 업무 변경 2. 인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보건의료인력등에 대한 치료 지원 3. 인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보건의료인력등을 위한 상시적고충처리기구 설치. 다만,「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고충처리위원을 두는 경우에는 보건의료인력등을 위한 고충처리위원의 선임 또는 위촉4. 인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보건의료인력등의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

- 5. 그 밖에 보건의료인력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법적

 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 ② 인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보건의료인력등은 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전단에 따른 요구를 이유로 보건의료인력등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③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에 따른 관리감독자는 보건의 료인력등에게 폭언·폭력·성 희롱 등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제1항제3호에 따른 고충처리기 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고충처리기구는 10일 이내에 조치 사항과 그 밖의 처리결과를 보건의료기관의 장과 해당보건의료인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충처리기구는 인권침해 행위가 다른 법률

<<u>신</u> 설>

에 위반된다고 판단할 때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필요 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충처리기 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 항은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한다.

제7장 벌칙

제21조(과대료) ①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보건의료인력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보호조치를 요구한 보건의료인력등에게 불이익을 준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대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